

IFRS 도입에 따른 자원개발회계 개선방안

최종일 상무
(삼일회계법인)

1. 서론

회계란 기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거래와 사건 및 그 결과를 한눈에 정리해 주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언어와도 같다.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이러한 회계정보의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1년부터 국내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서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IFRS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기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해석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회사는 IFRS의 실무적용을 위해 별도의 세부적인 회계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이렇게 수립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보에 대한 회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주석을 통해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광물자원회계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광물자원의 탐사 및 평가단계의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의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각종 사업모델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광물자원회계에서는 매장량 및 영업성과에 대한 공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IFRS는 탐사 및 평가단계에서의 지출금액을 공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공시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국내의 광물자원개발회사들은 투자금액, 매장량 등에 대한 제한적인 공시를 하고 있다.

현재 IASB에서는 별도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추출활동(Extractive activities)에 적용하는 재무보고 기준에 대해 연구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재무보고기준의 발표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IFRS 도입을 앞두고 발생하는 다양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이슈와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의 실무적용사례를 검토하여 개별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보고 목적에 적합한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IFRS 적용대상 국내외 기업의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회계이슈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국내기업의 적용사례는 해외자원개발협회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수행된 설문

조사를 참고하였으며, 총 12개 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아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IFRS하에서의 회계이슈를 도출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광물자원회계 이슈 및 개선방안

2-1. 광물자원개발 지출의 자본화의 범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6호는 IFRS 전환 이전에 회사가 적용하였던 회계기준을 수용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작성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된 기준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자원개발과 관련된 지출의 자본화 여부는 개별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르는 것으로 봐야한다. 자원개발지출은 탐사권 매입이전 단계에서의 지출, 탐사 및 평가 단계에서의 지출,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의 지출로 구분되며, 단계별 지출액의 자본화에 대한 회계처리이슈는 다음과 같다.

2-1-1. 탐사권 매입 이전단계의 지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6호는 탐사 및 평가단계에서의 발생된 지출을 기준서의 범위로 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탐사 및 평가단계 이전에 발생한 지출은 탐사활동 수행의 타당성 검토 비용으로서, 향후 탐사권 획득을 통한 탐사활동수행, 매장량의 발견 등과 직접적 상관관계 및 실질적 기여도를 규명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외 광물자원개발기업은 탐사권 매입 이전의 지출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보아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최근 IASB가 발표한 Discussion Paper "Extractive activities"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자산은 탐사 및 추출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취득할 때 최초로 인식되는 것이며, 석유나 광물을 발견하고 추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탐사, 평가,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이러한 법적인 권리에 가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법적인 권리인 탐사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관련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사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출이라고 할지라도 제3자로부터 구입한 탐사 관련 정보, 탐사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형자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정보 및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1-2. 탐사 및 평가단계에서의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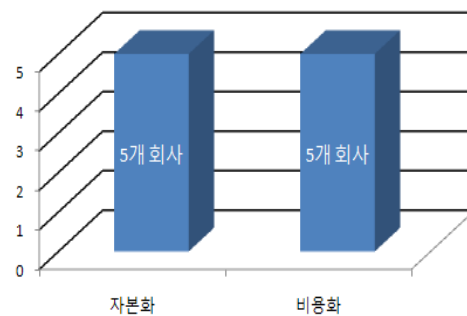
IFRS에서는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사건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본화될 수 있는 지출의 개략적인 예시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지출항목별 자본화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관련 회계정책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탐사 및 평가단계에서의 지출은 탐사권 취득을 위한 지출, 광구에서의 부존자원 여부를 확인하여 기술 및 상업적 실현가능성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탐사권 취득을 위한 지출은 탐사권 취득을 위한 사전 조사 후, 특정광구의 매입을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Signing Bonus, 광권취득비용 및 각종 자문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탐사권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탐사평가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탐사 및 평가를 위한 지출은 탐사 및 평가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원가는 탐사를 위한 설비의 취득, 지질 및 지구물리 탐사비용(G&G : Geological and Geophysical), 탐사를 위한 시추비용, 굴착비용, 기술 및 상업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 등이 포함되며, 간접원가는 관리부서의 인건비 등 탐사 및 평가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리원가 및 일반간접원가(G&A : General and administrative)성격의 원가이다.

직접원가는 탐사 및 평가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이므로 대부분의 광물 자원개발회사의 경우 탐사 및 평가단계에서의 지출을 자본화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원가의 경우에는 탐사·평가활동에 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자본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실무적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비용 대비 효익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6호는 이러한 간접원가의 자본화가 IAS 2 "재고자산" 및 IAS 38 "무형자산"에서 정한 원가의 구성요소와는 일치하나 IAS 16 "유형자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준서에서 간접원가에 대한 자본화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회사가 관련한 회계정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 및 일반간접원가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 질의에 응답한 회사 10곳 중 5곳은 관련 지출을 자본화하며, 나머지 5곳은 관련 지출을 비용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G&A Cost의 자본화 여부



참고로 미국의 경우, 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성공원가법과 전부원가법에 따른 탐사 및 평가비용의 자본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2〉 미국회계기준에 따른 탐사·평가비용의 자본화 범위

구분	성공원가법	전부원가법
Acquisition Cost	자산화	자산화
G&G Cost	비용화	자산화
G&A Cost	비용화	자산화
Exploratory dry hole	비용화	자산화
Exploratory well, Successful	자산화	자산화

자본화된 지출은 생산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설비의 취득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탐사평가유형자산은 생산개시 이전이라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며, 감가상각비는 탐사평가무형자산에 가산하여 다시 자본화한다. 결론적으로, 탐사·평가단계에서 자본화된 지출은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개시시점까지 비용이 이연된다.

2-1-3. 개발단계에서의 지출

개발비는 탐사결과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발견하여 개발시추 및 생산/공급 시설을 건설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개발비는 개발활동이 자원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보다는 생산시스템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비용이 자원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IFRS를 적용하는 외국 광물자원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파이프 및 펌프, 탱크 등 생산에 필요한 제반 시추설비의 취득 및 설치비용에 대해서 성공하지 않은 개발관련 비용도 모두 자본화하고 생산이 개시되는 시점에 상각을 하고 있다.

2-2. 조인트벤처 회계처리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활동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출이 자원의 존재여부가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하게 되므로, 상당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회사들 간에도 각자의 전문지식과 자본을 결합한 조인트벤처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투자를 통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의 위험을 경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고 있다.

2-2-1. 공동지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는 조인트벤처 참여자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정보의 보고에 관한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 IFRS하에서 조인트벤처의 형태는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및 공동지배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는 모두 구속력 있는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지배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동지배관계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조인트벤처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며 중요한 전략적 영업·재무의사결정시, 둘 이상의 참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때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영업·재무의사결정이 둘 이상의 참여자의 만장일치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또는 각각의 참여자들에게 거부권(Veto power)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공동지배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특정한 참여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이 거부권 없는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동지배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적 영업·재무의사결정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1호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중요한 전략적 영업·재무의사결정이란 조인트벤처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광구 철수, 지분의 매각 등과 같이 중요하나 발생빈도가 낮고 비경상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참여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요한 전략적 영업·재무의사결정에 포함되는 예는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중요한 설비투자, 중요한 사업전략의 변경 등과 같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경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2-2. 조인트벤처 회계처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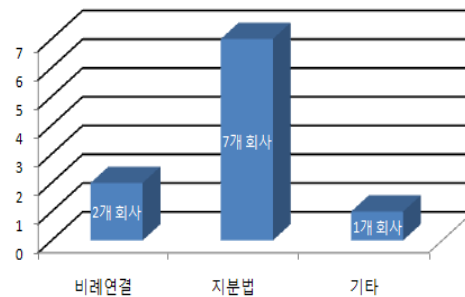
조인트벤처에 대한 회계처리 유형은 법인형태의 조인트벤처와 비법인형태의 조인트벤처(Unincorporated Joint Venture)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IFRS에서는 법인형태의 조인트벤처의 경우 비례연결법을 사용하되 대체적으로 지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법인형태의 조인트벤처는 공동지배사업과 공동지배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비례연결과 유사한 방식의 회계처리로 볼 수 있다. 법인형태의 조인트벤처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조사대상 회사 중 10곳이었으며, 이들 중 7곳은 지분법을 사용하고 2곳은 비례연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광물자원개발회사는 대부분 대체적인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분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FRS에서는 공동지배가 성립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지배가 미성립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공동지배가 미성립하는 경우 조인트벤처의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수취할 권리를 획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인트벤처의 자산, 부채를 참여자의 재무제표에 자산,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공동지배가 미성립하는 법인형태의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주식의 보유와 같으므로 지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에 따라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고, 중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법인형태의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광물자원개발회사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다.

IFRS 규정 및 주요 광물자원개발기업의 실무적용사례를 종합하면 자원개발 투자금액은 조인트벤처의 법적 형태 및 당사의 공동지배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표3> 법인형태 J/V 투자회 회계처리



<표 4> 조인트벤처 회계처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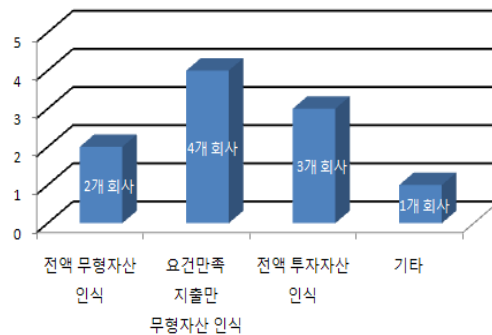
구분		공동지배가 성립	공동지배가 미성립	
			중대한 영향력 있음	중대한 영향력 없음
조인트벤처의 법적 형태	비법인 형태	비례연결	무형자산	
	법인 형태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지분법	매도가능증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광물자원개발회사는 공동지배가 미성립하는 비법인형태의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금액을 무형자산(탐사평가무형자산 또는 자원개발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투자금액을 모두 자본화할 것인지, 투자금액 중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영업비용

등 자본화하기 어려운 지출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할 것인지의 회계처리는 회사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관련 투자금액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상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회사와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회사간에는 상당한 손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광물자원개발회사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조사대상 국내회사 중 공동지배가 성립하지 않는 비법인형태의 조인트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는 총 10곳이었으며, 이중 투자금액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상각하지 않는 회사가 3곳, 투자금액의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자산화 요건을 만족시키는 지출에 대해서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후 상각하는 회사가 4곳, 투자금액을 전액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생산량비례법 등에 의해 상각하는 회사가 2곳으로 관련 형태의 투자에 대해 회사별로 다양한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공동지배 미성립시 회계처리(비법인형태)



원칙적으로 비법인형태의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광물자원이라는 공동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광물자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해당 투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생산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라고 판단된다. 향후, 동 형태의 투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2-3. 조인트벤처의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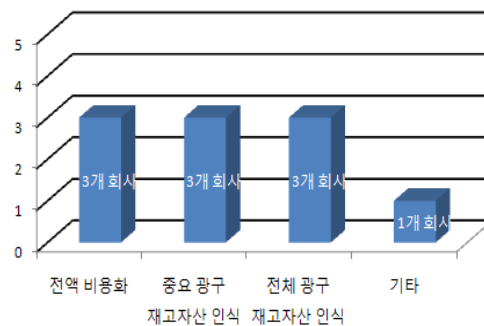
재고자산은 조인트벤처의 최종산출물로서 개별 참여자에 대한 분배의 대상으로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율이 낮은 경우에도 지분에 상당하는 만큼 재고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참여자의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고자산의 인식을 위해서는 재고물량이 관리되고 자원 단위당 생산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정 광구의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아 재고자산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재무정보에 대한 비용 대비 효익 관점에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재고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출물의 분배비율이 광구가 소재하는 국가 정부의 정책이나 유가, 경제상황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동한다면, 분배물량에 대한 통제

가 어려워 재고물량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의적인 추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광물자원개발회사는 재고자산을 인식하지 않거나 재고자산의 금액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광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있다. 조사대상회사 중 비법인형태의 조인트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는 10개였다. 이들 회사 중 재고자산의 합리적인 추정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않아 재고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3곳, 재고자산의 손익효과가 중요한 광구에 대해서만 재고자산을 인식하는 회사가 3곳, 재고자산의 중요성과 관련없이 전체 광구에 대해서 재고자산을 인식하는 회사가 3곳으로 조사되었다.

<표6> 재고자산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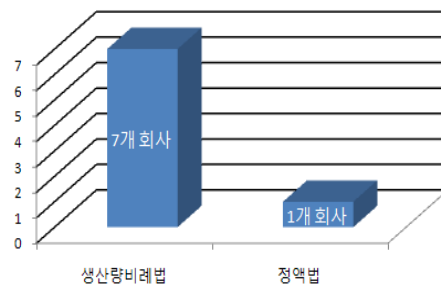
2-3. 감가상각 회계처리

2-3-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또는 채굴가능기간)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자산에 대한 평가과정은 아니다. IFRS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언급하고 있을 뿐, 광물자원개발회사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탐사·평가·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자본화된 원가는 대부분 생산량비례법(a Unit of Production, UOP)에 의해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회사는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조사대상회사 중 현재 자원개발과 관련된 유·무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회사는 8곳이었으며, 이들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모두 생산

<표7> 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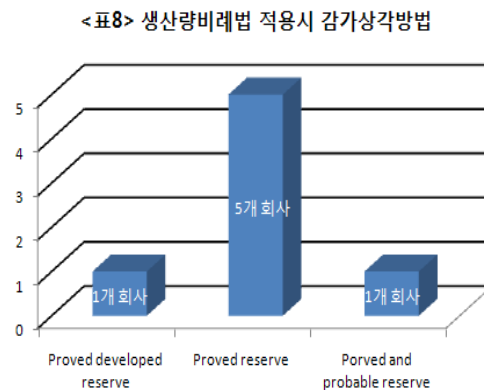


량비례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의 광물자원개발회사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 생산량비례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3-2. 상각 기준의 결정

현재 대부분의 광물자원개발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생산량비례법과 관련하여 IFRS에서는 구체적인 상각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IFRS를 적용하는 외국 광물자원개발회사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성공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원의 탐사·개발과 관련된 원가에 대해 확인개발 가채매장량(Proved Developed Reserve)을 기준으로 상각을 하고 있다. 다만, 탐사권의 취득과 관련된 원가는 확인 가채매장량(Proved Reserve) 또는 확인·추정 가채매장량(Proved Plus Probable Reserve)을 기준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실제로 대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전부원가법을 적용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원가중심점별로 자본화된 모든 원가에 대해 확인 가채매장량(Proved Reserve) 또는 확인·추정 가채매장량(Proved Plus Probable Reserve)을 기준으로 상각을 실시하고 있다.

생산량비례법 적용시의 감가상각방법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부분의 광물자원개발 회사는 확인 가채매장량 (Proved Reserve) 을 기준으로 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회사 중 생산량비례법에 의해 상각비를 계산하고 있는 회사는 7곳이었으며, 이 중 확인개발 가채매장량(Proved Developed Reserve)기준으로 상각비를 계산하는 회사는 1곳, 확인 가채매장량(Proved Reserve)을 기준으로 상각비를 계산하는 회사는 5곳, 확인·추정 가채매장량(Proved Plus Probable Reserve)을 기준으로 상각비를 계산하는 회사는 1곳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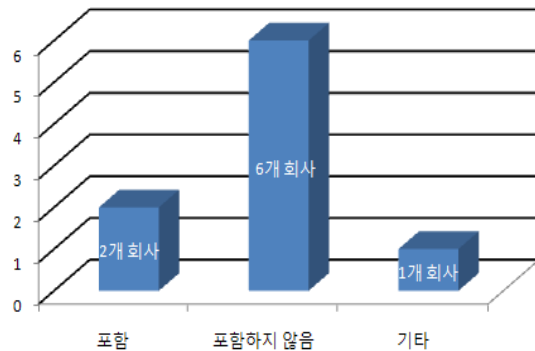


외국 광물자원개발회사의 경우 KPMG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Group ("KPMG IFRG")에 의해 2008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33개 중 약 48%인 16곳은 확인·추정 가채매장량을 기준으로, 약 30%인 10개 회사는 확인개발 가채매장량을 기준으로 상각비를 계산하였으나 확인 가채매장량 기준으로 상각을 하는 회사는 단 2곳에 불과하여 국내 기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¹⁾. 국내 대부분의

광물자원개발회사가 성공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확인 가채매장량 기준의 상각방법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확인 가채매장량 또는 확인·추정 가채매장량을 기준으로 상각비를 계산할 때, 향후 광구를 개발하는데 소요될 미래 예상 지출을 상각대상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총 가채매장량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매장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비용을 예측하여 상각대상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미래의 예상 지출을 포함하는 곳은 설문에 응한 9개의 회사 중 2곳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미래의 예상지출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9> 미래 예상 지출 포함 여부



2-4. 복구충당부채

2-4-1. 복구충당부채의 인식

광물자원산업은 탐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사는 법이나 계약 조건, 회사 정책 또는 과거 관행 등에 의해 플랜트나 설비 시설의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채굴 생산을 마치고 나면 시설 등을 제거하고 토지를 복구하는 등의 환경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법령상 복구의무는 광구가 소재하는 국가의 환경 및 자원개발 관련 법령을 검토함으로써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계약상 복구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없더라도 복구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 환경 복원을 약속한 회사라면 설령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잠재적인 의무를 지게 된 것이며 이는 IFRS에 따라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구 의무는 설비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탐사광구의 경우에는 설비 등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설비의 해체 및 복구와 관련된 비용이 중요하게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는 생산 또는 개발 광구에 대해서만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은 충당부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서에 따르면, 복구충당부채를 인

1) 류기홍 회계사, Upstream산업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사례분석, 자원·에너지 법제연구회(2009), P228.

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법령이나 계약상의 복구의무 외에도 복구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의 복구비용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복구의무가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복구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IFRS는 복구비용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복구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복구충당부채는 복구비용을 발생시키는 설비 등의 자산의 취득 및 설치를 완료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에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4-2. 복구충당부채의 측정 및 조정

복구비용의 추정시 생산 일정이나 복구 방법, 지역 규제에 따라 그 변동이 크므로 측정 시점에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복구비용 예측 시 예상 물가상승률, 기술의 발전, 생산성 향상, 그리고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규제의 변경이나 기술 개발 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다면 회사는 발견 즉시 이를 반영해 주어야 한다. 복구비용은 동일한 국가나 동일한 광구 내에서도 생산이나 개발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광구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복구비용의 측정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구충당부채를 평가하는 시점과 복구비용이 지출되는 시점사이에 1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정 복구비용과 추정 복구비용의 현재가치간의 차이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IFRS는 할인율 추정시 부채의 특유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유위험을 정의하여 각각의 위험별로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나, 이는 실무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광물자원개발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용등급이 반영된 회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사용하거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기업은 국공채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관련 법률의 개정, 계약의 변경 또는 기타 제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추정 복구비용이나 복구비용의 발생시기, 할인율 등이 변동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기존 한국기업회계기준은 당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IFRS에서는 충당부채 평가 시 현행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변동효과를 주식공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2-5. 정부대여금의 회계처리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용자받는 자금(이하 예특기금)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성공불 용자의 경우에는 실패 확정 시 원리금을 감면받는 상환면제가능대출(forgivable loan)이므로 대여를 받는 자는 일반 시장에서의 대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익을 얻게 된다. 이는 일종의 정부보조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예특기금도 IFRS상 차입금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원칙적으로 공정가치평가 및 차입기간 중의 이자인식 및 외화환산 등의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 한국회계기준과 IFRS에서의 예특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표 10〉 정부대여금의 회계처리

구분	한국회계기준(기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차입시	- 차입금액을 부채로 계상	- 공정가치를 부채로 계상 - 차입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정부보조금으로 인식
차입기간 중	- 이자 및 원금상환 인식 - 외화환산 인식 - 성공불 용자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 회계처리 없음	- 이자 및 원금상환 인식 - 외화환산 인식 -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 정부보조금은 원본자산의 상각형태에 따라 상각비에서 차감 - 성공불 용자의 경우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 및 환산손익을 인식
기타	- 원리금 감면시 자산 감액 및 채무면제 인식 - 특별부담금 지급시 비용 인식	

IFRS에서는 정부로부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함에 따른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차입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효익은 예특기금의 공정가치와 차입금액의 차이로 계산되며, 관련 효익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융자금 차입시 공정가치의 측정은 상환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지급 스케줄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다. 그러나, 일부 광물자원개발회사는 에특기금의 공정가치와 차입금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회사는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시장은 일반 채권시장과 구분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계약상 표면이자율은 정부보조금시장의 이자율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에특기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간에도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성공불 융자의 경우에는 특별부담금 지급시 실질 지급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에특기금의 공정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공불 융자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0호에서는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공불 융자는 탐사가 실패로 판명될 때 채무면제금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며, 그 이전까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정부로부터 상환의무면제와 관련된 승인을 받기 이전이라도 탐사의 실패가 확정적이고 정부로부터 상환의무면제를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관련 금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2-6. 공시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의 목적은 기업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포함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내용으로는 회사가 투자한 광물자원개발자산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적인 정보의 주석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고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FRS를 적용하는 다수의 외국 광물자원개발회사는 그들이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폭넓은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는 정부기관 등의 규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관련 정보의 공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사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국내 광물자원개발회사는 광구취득사실, 자원개발과 관련된 지출 정도만을 간략하게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을 뿐이며, 설문결과 향후 추가적인 정보의 공시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광물자원개발회사의 주석공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IFRS에서도 광물자원의 탐사 및 평가와 관련한 회계정책, 탐사와 평가단계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영업 및 투자 현금흐름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IASB가 발표한 Discussion Paper "Extractive activities"는 추출산업에 대한 회계기준 및 공시사항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물론 Discussion Paper는 기준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향후 토론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될 수 있으나, 추출산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통해 공시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iscussion Paper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석공시사항은 매장량 및 매장량의 공정가치 평가, 영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1〉 주요공시사항(Discussion Paper "Extractive activities")

구 분	주요 공시 사항
매장량에 대한 가치평가	1) 매장량(Quantity of reserve) 2) 추출활동을 통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금흐름 및 Fair Value 3) 매장량 및 매장량의 공정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된 주요 가정 및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4) 연도별 매장량 및 매장량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설명
영업성과 평가	1)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수익 및 생산원가 2) 탐사, 평가 및 개발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3) 탐사, 평가 및 개발과 관련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

2-6-1. 매장량의 공시

광물자원개발회사의 재무적 상황 및 미래 현금유입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장량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매장량의 정의 및 평가에 대해서 여러기관의 다양한 의견과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중 어떤 것을 공통의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Discussion Paper에서는 광물(Mineral)의 매장량을 추정하고 분류하는 데에는 Committee for Mineral Reserves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CRIRSCO) Template을 사용하고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추정하고 분류하는 데에는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SPE)에서 발행된 Petroleum Resource Management System(PRMS)을 사용하여, 확인 가채매장량과 및 추정 가채매장량을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FRS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광물자원개발회사들은 자신들이 추정하는 가채매장량의 범위와 연도별 추이 변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차보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회사들도 투자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매장량에 대한 공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표 12〉 매장량에 대한 공시

PROVED DEVELOPED AND UNDEVELOPED RESERVES 2008							million barrels
	Europe	Africa	Asia-Pacific	Middle East, Russia, CIS	USA	Other Americas	Total
Shell subsidiaries							
At January 1	615	567	158	908	375	128	2,751
Revisions and reclassifications	13	107	6	180	35	(46)	295
Improved recovery	-	31	-	23	-	-	54
Extensions and discoveries	9	4	6	14	7	-	40
Purchases of minerals in place	-	-	-	-	-	4	4
Sales of minerals in place	(21)	(4)	(2)	(36)	(1)	-	(64)
Production	(135)	(113)	(32)	(85)	(69)	(26)	(460)
At December 31	481	592	136	1,004	347	60	2,620

(Source: Shell Annual Report and Form 20-F, 2008)

2-6-2. 매장량의 공정가치 공시

회사가 투자한 광물 및 석유 등으로부터 발생할 향후 현금흐름과 이를 기초로 계산된 매장량에 대한 공정가치는 정보이용자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가치와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매장량의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보다는 경영진이 수립한 가정에 따라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공정가치를 정보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가치에 대한 결과와 함께 공정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한 주요 가정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함께 공시함으로써 공정가치의 불확실성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FRS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 광물자원개발회사들은 지역별로 미래의 현금흐름 및 매장량의 공정가치를 공시하고 있다.

〈표 13〉 매장량의 공정가치 평가

(€ million)	Italy	North Africa	West Africa	North Sea	Caspian Area	Rest of World	Total consolidated subsidiaries	Total joint ventures and associates
At December 31, 2008								
Future cash inflows	46,458	62,785	22,344	16,056	22,199	13,622	183,464	4,782
Future production costs	(5,019)	(10,673)	(6,715)	(3,414)	(6,380)	(2,715)	(34,916)	(1,104)
Future development and abandonment costs	(6,805)	(6,153)	(3,868)	(2,166)	(5,114)	(1,897)	(26,003)	(1,845)
Future cash inflow before income tax	34,634	45,959	11,761	10,476	10,705	9,010	122,545	1,833
Future income tax	(11,329)	(27,800)	(5,599)	(7,621)	(2,781)	(1,901)	(57,031)	(1,032)
Future net cash flows	23,305	18,159	6,162	2,855	7,924	7,109	65,514	801
10% discount factor	(13,884)	(8,639)	(2,155)	(869)	(6,272)	(2,243)	(34,062)	(763)
Standardized measure of discounted future net cash flows	9,421	9,520	4,007	1,986	1,652	4,866	31,452	38

(Source: Eni Annual Report, 2008)

또한, 일부 IFRS 적용 회사들은 주식에서 당기 중 공정가치의 변동 원인을 설명하여, 매장량, 판매가격 및 생산원가 등 주요 요인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민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는 어떤 요소가 매장량의 공정가치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회사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회계기간 중의 공정가치의 변동과 관련하여 매장량의 변동, 판매가격의 변동, 추정 생산 및 개발원가의 변동, 할인율의 변동, 세금효과의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14〉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공시

Changes in standardized measure of discounted future net cash flows (€ million)	2008
Beginning of year	53,893
Beginning of year related to joint venture and associates	(891)
Beginning of year consolidated	53,002
Increase (decrease):	
• sales, net of production costs	(26,202)
• net changes in sales and transfer prices, net of production costs	(39,699)
• extensions, discoveries and improved recovery, net of future production and development costs	1,110
• changes in estimated future development and abandonment costs	(6,222)
• development costs incurred during the period that reduced future development costs	6,584
• revisions of quantity estimates	5,835
• accretion of discount	10,538
• net change in income taxes	21,359
• purchase of reserves in-place	476
• sale of reserves in-place	25
• changes in production rates (timing) and other	4,646
Net increase (decrease)	(21,550)
Standardized measure of discounted future net cash flows consolidates	31,452
Standardized measure of discounted future net cash flows joint ventures and associates	38
Standardized measure of discounted future net cash flows	31,490

(Source: Eni Annual Report, 2008)

2-6-3. 영업성과에 대한 공시

IFRS 적용 기업은 기업에서 수행하는 정유사업, 석유화학사업 등 다른 업무부문과는 별도로 광물자원의 생산·판매 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영업성과를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기도 한다. 구분된 영업성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이용자는 해당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익 및 생산원가의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IFRS 적용 기업은 수익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수익 금액과 관계사간의 수익금액을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으며, 원가는 탐사, 개발 및 생산단계별 지출액을 지역별로 공시하고 있다.

〈표 15〉 영업성과에 대한 공시

(단위: mil EURO)

구분	Consolidated subsidiaries					Total
	Europe	Africa	North America	Asia Pacific	Rest of World	
Revenues						
Sales to unaffiliated parties	4,521	2,930	94	2,785	2,205	12,535
Transfers to affiliated parties	6,310	11,425	89	403	903	19,130
Total Revenues	10,831	14,355	183	3,188	3,108	31,665
Production costs	(1,280)	(1,055)	(117)	(210)	(398)	(3,060)
Exploration expenses	(185)	(209)	(99)	(156)	(115)	(764)
DD&A and valuation allowances	(1,266)	(1,195)	(239)	(422)	(492)	(3,614)
Other expenses	(260)	(1,214)	(3)	(34)	(605)	(2,116)
Pretax income from producing activities	7,840	10,682	(275)	2,366	1,498	22,111
Income Tax	(5,376)	(7,160)	74	(1,199)	(677)	(14,338)
Results of oil and gas producing activities	2,464	3,522	(201)	1,167	821	7,773

(Source: Total Annual Report, 2008)

3. 결론

최근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거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은 개발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비교적 장기일 뿐만 아니라, 개발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경제적 상황의 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IFRS에서도 자원개발과 관련된 주요 회계이슈 및 공시사항의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IFRS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광물자원개발회사들은 주요 회계이슈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의 개념체계 및 동종 회사들의 실무적용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회계처리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시와 관련하여 많은 회사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IFRS 도입과 함께 각각의 회사가 처한 경영환경에 맞는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회사별로 회계정책이 다소 상이하여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공시사항과 관련하여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6호에서 정한 공시사항 이외에 별도의 공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가 대부분으로 당분간은 외국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시내용이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물자원개발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의 제시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광물자원개발회사 및 관련 기관간에 자원개발 회계처리의 보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기준서가 발표되기 이전이라도 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보의 공시범위를 확대하여 정보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것도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PricewaterhouseCoopers, 2008, Financial reporting in the mining industry
2. IASB, Discussion Paper "Extractive Activities". 2010
3. 류기홍, 2009, Upstream산업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사례분석, 자원·에너지 법제 연구회
4. Society of Petroleum Evaluation Engineers and the Canadian Institute of Mining Canadian, Oil and Gas Evaluation Handbook
5. Shell, 2008, Annual Report & 20-F
6. Eni, 2008, Annual Report
7. Total, 2008, Annual Report